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2006. 1. 19.  
행정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12월 29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12월 30일

다. 상정일자 : 제118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(2006. 1. 19)

상정, 심사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제안설명자 : 세입총괄팀장 김 충

#### 가. 제안이유

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(2005.11.1 대통령령제19111호)이 개정되면서 이·미용사 면허발급 관련 수수료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수수료를 정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규정된 관련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골자

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·미용사면허신규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를 동법 시행령에 신설함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서 폐지하는 수수료(2종)

연번	종 목	단위	수 수 료(원)		비 고
			현 행 (조례)	개 정 (시행령)	
1	이·미용사 면허증 신규발급	1건	3,000	5,500	조례 관련규정 삭제
2	이·미용사 면허증 신규발급	1건	2,000	3,000	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등 건은 2005.11.1일 대통령령 제19111호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아미용사면허 신규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가 각각 5,500원과 3,000원으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자치구 조례로 정했던 관련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 별표에 규정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2호 제목중 46종을 44종으로 하고, 동호나목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중 (26)아미용사 면허증 신규발급과 (27)아미용사 면허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정형기 위원) : 수수료를 많이 올리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?
- 답변요지(김충 세입총괄팀장) :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각 구청의 수수료가 통일되었음.
- 질의요지(남두희 위원) : 신규·재발급 건수 및 징수금액은?
- 답변요지(김충 세입총괄팀장) : 2004년도에 신규는72건에 21만6천원을 징수하였고 재발급은 18건에 3만6천원을 징수하였음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#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5.12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(2005.11.1. 대통령령제19111호)이 개정되면서 이·미용사 면허발급 관련 수수료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수수료를 정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규정된 관련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골자

가.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·미용사면허신규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를 동법 시행령에 신설함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서 폐지하는 수수료 (2종)

연번	종 목	단위	수수료(원)		비 고
			현행 (조례)	개정 (시행령)	
1	이·미용사 면허증 신규발급	1건	3,000	5,500	조례 관련규정 삭제
2	이·미용사 면허증 재발급	1건	2,000	3,000	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근거법규

(1)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(2005.11.1. 대통령령제19111호) 제10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협의 또는 승인 : 필요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#### 마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05.12.1 ~ 12.21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.

(2)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.

(3) 신·구 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2호 제목중 “46종”을 “44종”으로 하고, 동호나목 중 “(26), (27)”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]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</p> <p>1.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(43종)(생략)</p> <p>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(46종)</p>	<p>[별표]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</p> <p>1.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(43종)(현행과 같음)</p> <p>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(44종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종 목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단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수수료액</th> <th style="width: 5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. 인·허가에 관한 사항(생략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나.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(1) ~ (25) (생략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(26) 이·미용사 면허증 신규발급</td> <td>1건</td> <td>3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(27) 이·미용사 면허증 재발급</td> <td>1건</td> <td>2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(28) (생략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 목	단위	수수료액	비고	가. 인·허가에 관한 사항(생략)				나.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				(1) ~ (25) (생략)				(26) 이·미용사 면허증 신규발급	1건	3,000원		(27) 이·미용사 면허증 재발급	1건	2,000원		(28) (생략)	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종 목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단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수수료액</th> <th style="width: 5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. 인·허가에 관한 사항(현행과 같음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나.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(1) ~ (25) (현행과 같음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(26) &lt;삭 제&gt;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(27) &lt;삭 제&gt;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(28) (현행과 같음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 목	단위	수수료액	비고	가. 인·허가에 관한 사항(현행과 같음)				나.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				(1) ~ (25) (현행과 같음)				(26) <삭 제>				(27) <삭 제>				(28) (현행과 같음)			
종 목	단위	수수료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인·허가에 관한 사항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1) ~ (25) 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26) 이·미용사 면허증 신규발급	1건	3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27) 이·미용사 면허증 재발급	1건	2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28) 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종 목	단위	수수료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인·허가에 관한 사항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1) ~ (25)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26) <삭 제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27) <삭 제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28)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